

Labor & Safety Q n A

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중 지상높이 31m의 기준은

Q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지상높이 31m의 기준은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포함한 높이인지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만을 말하는지 여부 《갑 설》 동 높이 기준은 건축관련 기본법인 건축법상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을 설》 모든 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법등에서 법적 목표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서로 달리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높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작업위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A

갑설이 타당함(건축법상의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축물, 지상높이의 기준, 최고높이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기본법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최고높이는 특별법적인 건축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분야 위험기계·기구 적용범위 등

제목 커팅그라인더 개조형 톱기계가 목재가공용동근톱인지 여부

Q

- (1) 커팅그라인더 개조형 톱기계(커팅그라인더에 동근톱을 부착하여 목재 절단)를 목재가공용동근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동 기계가 목재가공용동근톱인 경우의 방호조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고시 제91-50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가공용동근톱이란 강철원판의 둘레에 톱니를 만들어 이것을 회전체에 부착, 회전시키면서 목재가 공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톱의 노출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10mm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동기계는 커팅그라인더에 동근톱을 부착한 것으로서 톱의 노출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10mm 이상일 뿐만 아니라 그 사용용도가 목재가공용이므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동근톱으로 보아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가공용동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다만 위험기계·기구방호조치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절단용 목재가공용동근톱(일반적으로 켜는 톱날에 비하여 치진폭이 큼) 또는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에는 반발예방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고시 제91-50호)”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기준(고시 제93-41호)”로 개정



분야 안전보건상의 조치

제목 타워크레인의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는

Q 당 현장의 타워크레인 뒷부분이 대지경계선 밖으로 4m가량 침범하였을 때 어떠한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A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뒷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생활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시 사업장 내 근로자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상 필요한 조치는 다하여야 할 것임

분야 건설안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목 시공사가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Q 발주처와 계약시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적게 계상된 경우 행정상의 조치는

A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발주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자기공사자)임 따라서, 도급계약상의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발주자가 동법 위반혐의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분야 재해율 산정

제목 하수급업체의 재해가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Q 폐사에서 하수급인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지불하고 하수급인 업체 보험가입 승인신청을 득하였다면, 당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재해율 산정시 재해건수가 하수급인 업체로 접수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이 있는 여부 - 만약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에 의하여 재해율 산출시 재해건수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A 조사발표하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을 위한 건설업체별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지난 1년간(1. 1. ~ 12. 31) 발생한 총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그 업체의 연간 총건 설매출액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되며 - 이때에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한 재해건수 뿐만 아니라 그 도급액도 원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되고 있는 바 - 그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산정기준 제3호 가목(2)에 의거 하도급(하수급)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일반건설업체인 경우 그의(하도급 또는 하수급업체) 재해자수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 

※ 출처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